

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

전문개정 2012. 12.
 개정 2013. 1.
 개정 2014. 9.
 개정 2014. 11.
 개정 2018. 7.
 개정 2019. 11.
 개정 2020. 9.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업무에 대한 총장의 결재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 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고 각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교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과 책임)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대신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.

제4조 (중요사항) 본 규정에 규정된 위임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,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, 통상 업무가 아닌 특수 업무사항 등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.

제5조 (협조) 본 규정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타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,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전결권한의 대행)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그 전결권자의 차하위 직위자가 대행한다.

제7조 (보고) 전결 처리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효력) 본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9조 (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) 각 부서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되어온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